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임만균 의원입니다.
보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
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날로 고조되고 있으나, 현행 제도상으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에 대한 층수 규 제가 있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시키거나 주택공급을

통한 집값안정을 기대하기에 큰 어려움이 존재해 왔습니다.

○ 또, 주택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현 시점에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도 비율과 주거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도래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

- 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의 층수 규제를 완화하여 저층주 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고,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주거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6년 으로 연장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비롯한 집값안정 기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 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